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안내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충청지역본부

목 차

1. 개요
2. 외국인 자격관리
3. 외국인 당연가입
4. 외국인 징수 ·급여관리
5. 기타 참고 사항



1. 개요



■ 적용근거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법 제10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략)..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된다. or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 제2019-151호)

※ 외국인 고시 제1조

“이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시기, 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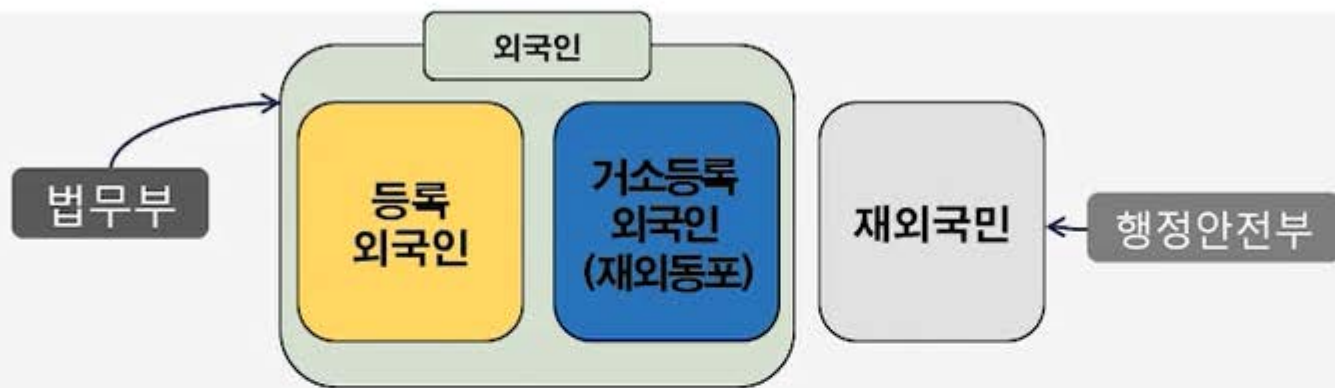
-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도 적용하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차이 적용(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내국인과 동일적용)

1. 개요



■ 적용대상



1. 등록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외국인등록

2. 거소등록외국인(재외동포: F-4)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거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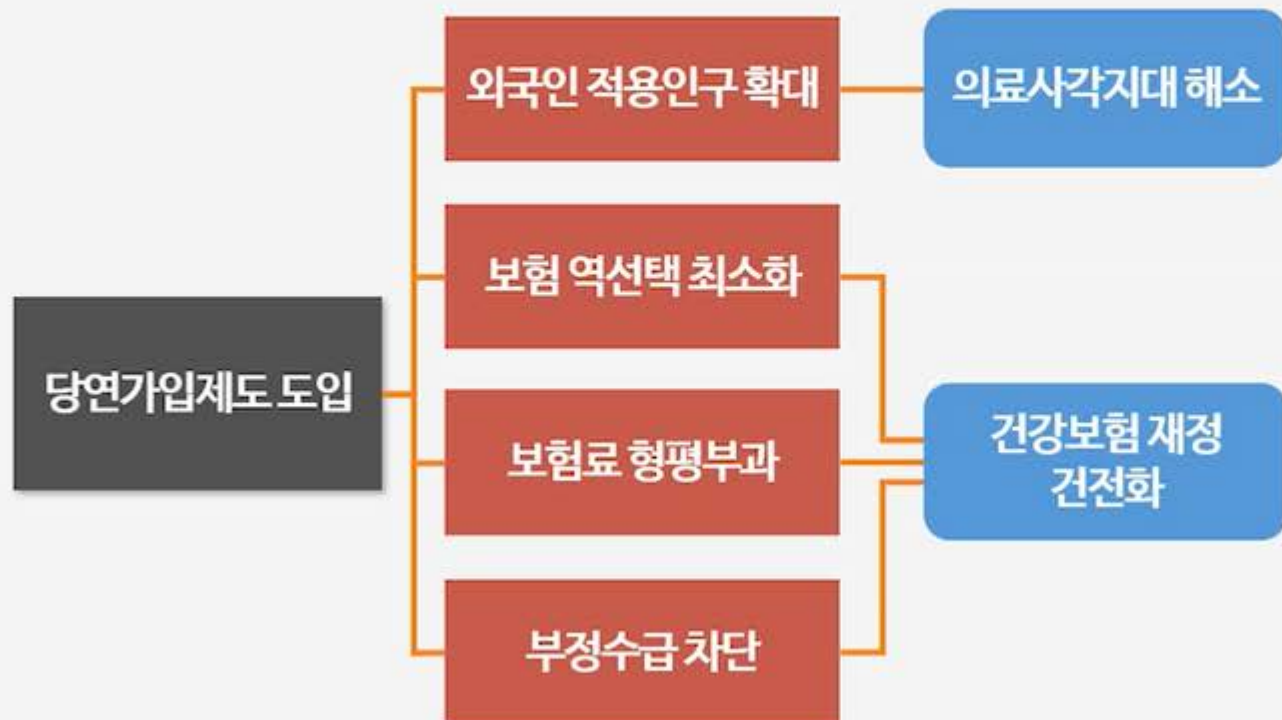
3.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 3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

1. 개요



■ 당연가입 추진목적



1. 개요



■ 유학생 가입

시행일	2019.7.16.	2021.3.1.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학생 당연적용 유예	유학생 당연적용 유예 종료
가입일자	입국일(외국인 등록일)	입국일(외국인 등록일) ... 추후 변동가능

2. 외국인 자격관리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충청지역본부

2. 외국인 자격관리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1. 다음 중 하나의 등록(신고)을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6개월 이상 국내거주 한 사람(결혼이민(F-6)은 즉시가입)

3. 재외국민 거주자 또는 다음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체 류 자 격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일부)	기타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 G-1(기타)은 G-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에 한함	
D-5	취재	E-5	전문직업	F-5	영주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D-8	기업투자	-	-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D-10	구직	E-10	선원취업				

2. 외국인 자격관리



■ 지역취득일 (고시)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7.11.>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그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6.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2. 외국인 자격관리



■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인정기준 축소 * 시행일: 2018.12.18.

변경전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변경후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 배우자의 자녀 포함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

- ▶ 좌동

2. 외국인 자격관리



■ 직장가입자 자격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2006.1.1.부터 의무적용 ※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근로자 : 2004.8.17.부터 의무적용
취득일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상실일	•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등 해당 서류 1부.



2. 외국인 자격관리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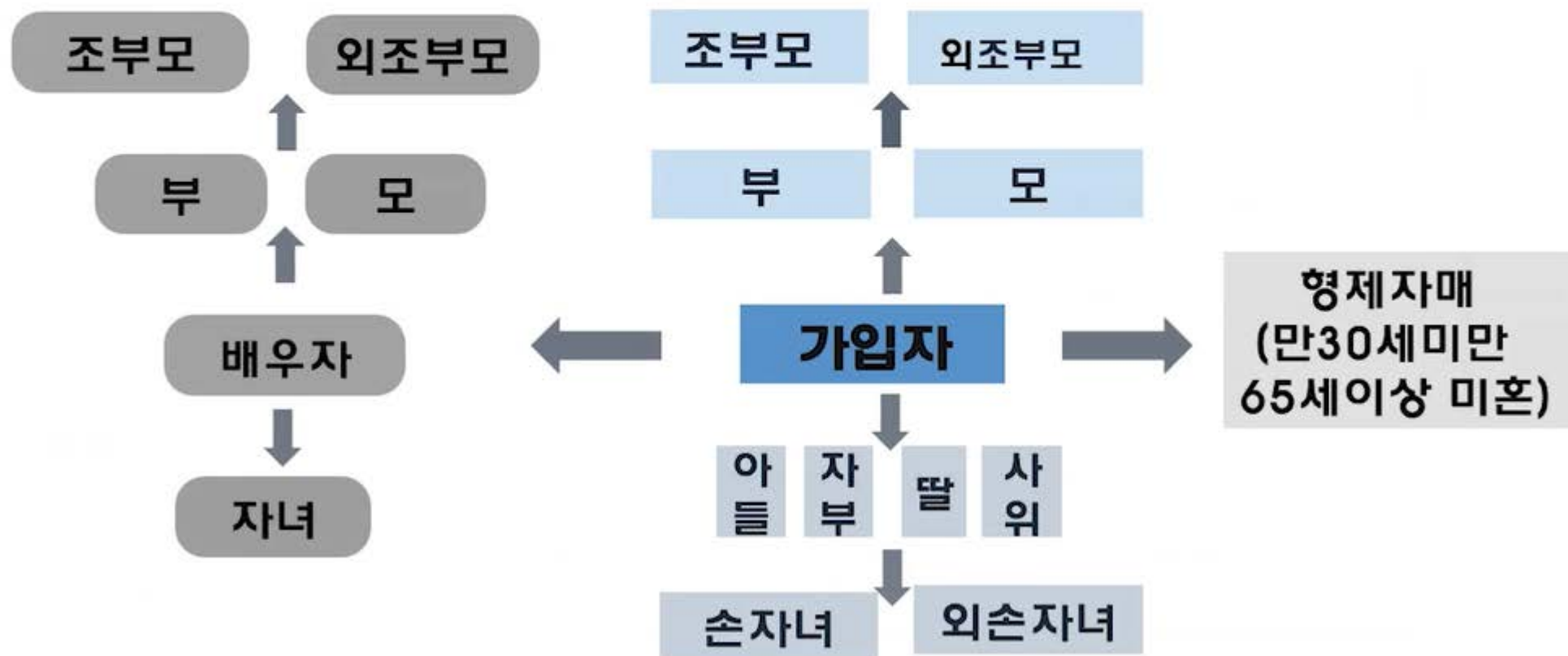
취지	장기요양보험료만 부담하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부담 완화 (2009.9.19.시행)
제외 대상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피부양자도 같이 제외)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지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수 없음. •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자는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 가입 제외됨.
상실 시기	• 신청한 날(직장자격 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시 직장자격취득일)
유의 사항	가입제외 후 체류자격 변경 시 재가입 처리(매달 공단 직권 확인 후 재가입 처리 안내문 발송 하고 있음.)

2. 외국인 자격관리



■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외국인 자격관리



■ 가족관계확인서류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1. 구비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
2. 인증기준	☒ 해당 서류에 외교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받은 서류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번역기준	☒ 국내 번역 ▶ 공증인의 번역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본 ▶ 국방부(국방어학원)에서 문서로 발급한 번역본 ☒ 국외 번역 ▶ 번역된 상태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 을 받은 서류는 국내 공증기관의 번역공증(또는 번역행정사 번역)을 거치지 않아도 번역 인정
4. 유효기간	☒ 국내 서류 ▶ 발급일부터 3개월 ☒ 국적국 서류 ▶ 서류 발급일(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 발급일·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부터 9개월

2. 외국인 자격관리



■ 가족관계확인서류 인정기준

외교부인증, 아포스티유확인

-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함
- ✓ 일반적으로 영사확인 절차(문서발행국 외교부 인증 → 주재국 한국영사관)를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공단에서는 외교부인증,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

2. 외국인 자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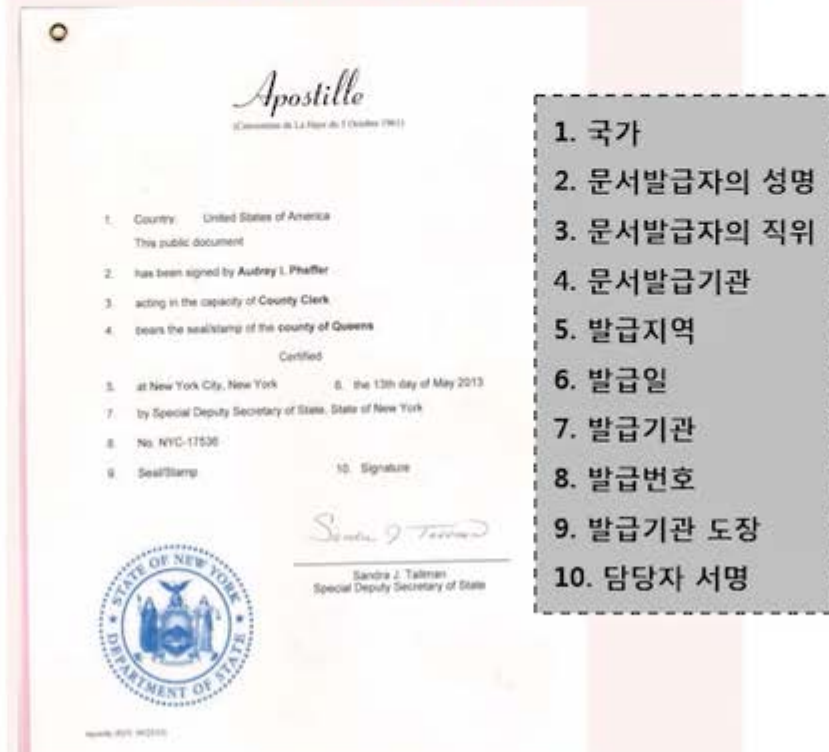
■ 가족관계확인서류 인정기준

외교부인증, 아포스티유확인

외교부인증 (중국)



아포스티유확인 (미국)



2. 외국인 자격관리



■ 가족관계확인서류 인정기준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한국 주재 외국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 ✓ 화교협회 발급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주민등록 확인서류
- ✓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 관계의 유효기간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허가자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미적용)

주한국대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영사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현재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성명 (Full name) C. [redacted]

성별 (Sex) M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국적 (Nationality) C. [redacted]

체류자격 (Status of alien) 영주권자 (P-1)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2019.03.12

등록번호 (Address) [redacted]

비고 (Remarks)

세무처 변경사항 (Percent of residential address change)

주거 가족 사항 (Family members who live together)

본적 (Nationality) C. [redacted]

성명 (Name) C. [redacted]

성별 (Sex) M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redacted]

주거 가족 사항 (Family members who live together) 자녀 C. [redacted]

비고 (Remarks) "이 하 전" (Below)

* 주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서류 상의 사항으로 기재되며, 관공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As the above family member information is based on submitted documents, further verification may be required in case of any change.

* 증명서 발급일: 2019년 03월 12일 (Date of issuance: 2019.03.12)

발급일 (Date of issue) 2019년 03월 12일 (Date of issue) 2019.03.12

발급처 (Office in charge) [redacted]

전화번호 (Phone No.) 134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Chief, Customs and Immigration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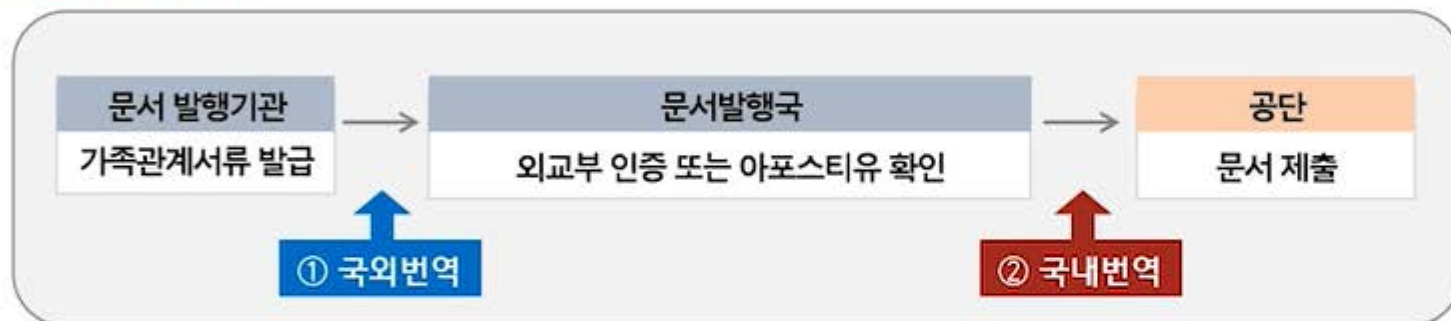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Chief, Customs and Immigration Office)

2. 외국인 자격관리



■ 가족관계확인서류 인정기준

번역기준



① 국외번역

-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번역한 후 외교부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경우 번역 인정

② 국내번역

- 공증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본
- 국방부(국방어학원)에서 문서로 발급한 번역본

2. 외국인 자격관리



■ 국가별 가족관계증명 사례(중국)

혼인관계공증(공증처)

표지

표지에는 '公证书' (공증서)라는 제목과 발급기관인 '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 (중화인민공화국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00성 00시 공증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본

원본에는 '公证书' (공증서)라는 제목과 발급기관인 '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 (중화인민공화국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00성 00시 공증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번역본

번역본에는 '公证书' (공증서)라는 제목과 발급기관인 '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 (중화인민공화국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00성 00시 공증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후면

후면에는 '公证书' (공증서)라는 제목과 발급기관인 '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 (중화인민공화국吉林省长春市国安公证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00성 00시 공증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중국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 여부 확인 (①)

☑ 유효기간 :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인증일로부터 9개월 (②)

☑ 인적사항 (①+ ②) 및 현재 혼인관계 확인 (③)

☑ 서류 발급기관의 서명 및 도장 확인 (④+⑤)

☑ 유효기간 :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인증일로부터 9개월 (⑥)

2. 외국인 자격관리



■ 국가별 가족관계증명 사례(베트남)

혼인상황확인서[동사무소 인민위원회(UBND)]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QUẬN 4
UBND PHƯỜNG 16
Số: 36/UBND-SNTTTH

Phường 16, ngày 22 tháng 01 năm 2019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ỦY BAN NHÂN DÂN PHƯỜNG 16

Xác định người còn sống/bất tử: Đỗ Văn Tuấn, là công chức ra pháp hộ tịch
với việc cấp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cho bà NGUYỄN THỊ KIM OANH

XÁC NHẬN:
Họ, chữ đệm, tên: NGUYỄN THỊ KIM OANH
Ngày, tháng, năm sinh: 24/01/1988
Giới tính: Nữ Dân tộc: Kinh Quốc tịch: Việt Nam
Giấy số hộ tịch: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số 079188014007, cấp CT QLHC số TTX01 cấp ngày 27/12/2018
Nơi cư trú: 92B/20/20 Yên Thái Đường, phường 16, quận 4,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rong thời gian cư trú tại xã này: tháng năm đến ngày tháng năm

Tình trạng hôn nhân: Từ ngày chứng nhận theo giấy chứng số số 29/2013 ngày 10/12/2013 của Ủy ban nhân dân phường 4, quận 4 đến nay chư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ai

Chứng thực theo quy định với bản chính
Số chứng thực: 1023, cấp ngày 22/01/2019
Ngày: 22-01-2019

CHỦ TỊCH
Phạm Văn Tuấn

호적인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16 동 인민위원회
제 36/UBND-SNTTTH

16 동, 2019년 01월 22일

혼인 상황 확인서
16 동 인민위원회

NGUYỄN THỊ KIM OANH (종교인사관)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DO VIET DIEN (국회인사관) 사법-호적공무원의 확인을 요구함

확인:
성명: NGUYỄN THỊ KIM OANH (명사확인)
생년월일: 1988년 01월 24일
성별: 여 민족: Kinh 국적: 베트남
주민등록번호: 079188014007
2018년 12월 27일
발급기관: 거주지 거주자에게 관련 국가 데이터의 관리감독 경찰청장
명사확인: 호적인사, 4 동, 16 동, 본부서장 92B/20/20
거주 기간: ...년...월...일...년...월...일...
혼인관계: 6 동 2 동 인민위원회 2013년 12월 10일에 20/2013 호 사법 증명서에 따라 남편은 사망임부의 현재까지 누구와 결혼 등록을 안함.

발급임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합니다. 이혼하지 않음 확인: 아래 있는 사람 (성명)과 같이 결혼을 등록함

성명: NGUYỄN THỊ KIM OANH
생년월일: 1988년 01월 24일
국적: Kinh
이전번호: 079188014007
거주지: 호적인사, 4 동, 16 동, 본부서장 92B/20/20
등록자: 호적인사 4 동 인민위원회

본문에 따라 복사하고 증명한다
증명 번호: 1453 증명 일자: 2019-01-22
2019년 02월 18일
부회장
LE THI THANH THUY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

증명서 서인자
서장
THAM TOAN THANG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

BỘ NGOẠI GIAO QUỐC CHHCHVN VIỆT 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R. OF VIETNAM

CHỨNG NHẬN / HỢP PHÁP HÓA LÃNH SỰ
CONSULAR AUTHENTICATION

Việt Nam

1. Quốc gia / Country: Việt Nam
Giấy tờ, tài liệu này / This public document

2. do Ông (Bà) / has been signed by: Park Seung Woo Ky

3. với chức danh / acting in the capacity of: Lãnh sự
Đại sứ quán Đại hàn Dân quốc tại Việt Nam

4. và còn dấu của / bears the seal/stamp of: Việt Nam

được chứng nhận / hợp pháp hóa lãnh sự / Certified

5. tại / TP. Hồ Chí Minh 6. ngày / 17. 05. 2016

7. Cơ quan cấp / Sở Ngoại vụ TP. Hồ Chí Minh

8. Số / 0075059 / SNV

Ký tên và đóng dấu / Signature and seal/stamp
Phó Trưởng phòng Lãnh sự
Nguyễn Thị Minh Hiền

☑ 인적사항 및 현재 혼인관계 확인 (①)

☑ 서류 발급기관의 서명 및 도장 확인 (②)

☑ 베트남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 여부 확인 (③)

☑ 유효기간 :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인증일로부터 9개월 (④)

2. 외국인 자격관리



■ 국가별 가족관계증명 사례(대만화교)

화교협회 호적등기부

籍登記簿

戶口名簿

戶長：沙德福

姓名	性別	出生日期	出生地點	配偶姓名	配偶出生日期	配偶出生地點	關係	備註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韓國清州華僑

2019年 03月 08日

호적등기부

戶口名簿

戶長：沙德福

姓名	性別	出生日期	出生地點	配偶姓名	配偶出生日期	配偶出生地點	關係	備註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沙德福	男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王淑珍	1951年02月25日	山東省濰縣	配偶	西元2001年02月25日 內政部結婚登記

한국청주

2019年 03월 08일

中華民國駐外館處
REPUBLIC OF CHINA (TAIPEI)
DIPLMATIC LEGALIZATION

No. A11188800048-001

駐韓國台北代表處
駐韓國台北經濟文化辦事處

證 明 書：中華民國 108 年 03 月 12 日

The attached document has been seen at the Taipei Mission in Korea.

Date of issue: Mar-12-2019

By authorization:

SONG, YANN-ORION
THIRD SECRETARY

附註：本證明書可證明下列

HO43848

☒ 인적사항 및 현재 혼인관계 확인 (①)

☒ 서류 발급기관의 서명 및 도장 확인 (②)

☒ 타이베이 대표부 인증 여부 확인 (③)

☒ 유효기간: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인증일로부터 9개월 (④)

3. 외국인 당연가입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충청지역본부

3. 외국인 당연가입



■ 당연가입 주요 내용

시행일	2019.7.16.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결혼이민(F-6)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성명표기	• 외국인 한글 또는 영문성명 선택 사용

3. 외국인 당연가입



■ 당연가입 개선 항목

구분	개선향목	세부내용	관련법령
자격 기준	지역가입 가능한 체류자격	유학(D-2), 일반연수(D-4) 가입불가 ※ 2021.2.28.까지 당연가입 유예	시행규칙 별표9
	입국일 취득	결혼이민, 유학(D2,D4)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호
	입국일 재가입 특례	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로 한정, 출국기간 중의 보험료는 단독세대로 산정 부과	고시 제4조제1항제2 호나목 고시제6조제2항
	보험료 미납시	자격상실 → 자격유지 ※ 다만, 유학, 일반연수는 미납시 자격상실	고시제4조제2항제7호



3. 외국인 당연가입

■ 당연가입 주요내용(*보험료는 2020년 기준)

보험료 부과

- 세대 단위로 소득 · 재산에 따라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123,080원)

보험료 경감

- D2(유학), D4(연수): 50% 경감**(61,540원)**
****연소득 360만원,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경감**

합가 신청

- 세대******(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

3. 외국인 당연가입



■ 가입제외 인정기준

✓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공단에

가입제외신청을 한 경우

- 외국의 보험은 외국인 등록(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포함)이전 가입보험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최대 1년(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 제외신청 필요)
- 자격 종류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제외신청 가능(가입제외 사전신청 가능)

※ **의료보장 범위**: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법상 요양급여 전부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에 비추어 외국인 가입자가 이 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상 가입자에서 제외함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임 ... 상근 변호사 법률자문(2007.12.17.)

3. 외국인 당연가입



■ 가입제외 종류

사유(코드)	외국의 법령(24)
특 징	- 가입제외사유가 준영구적이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보장을 하는 경우
사 례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 본국에서 자국민의 해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일본) - 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제출서류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코드)	외국의 보험(25)
특 징	- 개인이 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사 례	-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이용하다가 국내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출서류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인 당연가입



■ 가입제외 종류

사유(코드)	사용자와의 계약(26)
특 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사 례	-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 사용자가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사후보상하는 경우 등
제출서류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인 당연가입



■ 가입제외(자격상실)

- 미 가입자: 가입제외신청일
- 직장가입자: ① 가입제외신청일
② 취득신고일부터 14일 내에 가입제외 신청한 경우 소급상실
- 피부양자: 가입제외신청일
- 지역가입자: ① 가입제외신청일
② 보험료를 처음 낸 날부터 14일 이내 or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가입제외 신청하는 경우 소급상실(6개월 이내)

※ 외국의 보험 사유는 보험 최초가입일이 외국인등록일보다 이어야 하며
'외국의 보험'만 인정(사용자와의 계약 사유는 국내보험도 인정)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충청지역본부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 징수관리

송달지 적용

- 내국인과 동일하게 송달지 신청 적용하되 직권 해지 사유 추가

연체금

- 납부기한(직전월 25일)의 다음날부터 연체금 발생

자동이체 재청구 및 직권해지

- 당연적용 선납보험료 정기청구(25일) 반영 후 재청구 도입
(내용) 정기청구(25일) 반영 후 재청구 1회(익월 10일)도입
(일정) EX) 청구(7.25) → 재청구(8.10) → 납부반영(8.13) → 미납 직권해지(8.14)

결손처분

-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현행 결손처분 기준 유지

정기고지서 발송주소 적용순위

- 1순위: 송달지 등록주소, 2순위: 납부의무자 거소, 3순위: 자격세대주소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 체납자 비자연장 제한

개 요

외국인의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공유, 체납 외국인의 체류 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진납부 유도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 체납자 비자연장 제한

연계대상

- ✓ 만19세 이상의 등록(거소)외국인 체납정보

구 분	대 상	금 액
보 험 료	지역·직장 체납자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체납자 전체	10만원 이상

※ 관련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8조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 지역 선납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요

- ✓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의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 보험료 선납하지 않는 영주(F-5), 결혼이민(F-6)는 적용하지 않음
- ✓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 내국인 급여제한과 다른 방법으로 운영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제한시점	- 6회 체납, 통지서를 수령한 날	- 1회 체납, 매월 1일 자동제한
제한방법	- 우선 보험급여 실시 - 진료사실통지 후 보험료 미납 시 부당이득금 환수	- 진료 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 -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



4. 외국인 징수 · 급여관리

■ 급여 유의사항

- ✓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대여 행위는 불법행위
-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진료비(부당이득금)를 연대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3항 및 안 제104조제1항) ... 2019.6.12.시행

5. 기타 참고 사항



5. 기타 참고 사항



■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공통 검사항목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만19세~만64세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 /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5. 기타 참고 사항



■ 암 건강검진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위장 조영검사	4,638 ~ 5,199원	
위 내시경 검사	6,987원	
조직검사	4,370 ~ 6,570원	

-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5. 기타 참고 사항



■ 암 건강검진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9,200 ~ 9,798원	

-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 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5. 기타 참고 사항



■ 암 건강검진

xx 여성암 검진

유방암 검진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유방
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좌, 우)	1,699~3,730원	

-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외국어상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033-311-2000

감사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안내(최종)

*2020년 10월 기준임
추후 내용 변동가능